

#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1. 세입예산

○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6억 5천 6백 만원) 대비 24.0%(1억 5천 7백만원) 증액된 8억 1천 3백만원 수준임.

※ 최종 예산(7억 5천 4백만원) 대비 7.9%(5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55,936	753,768	813,247	157,311	59,479	24.0	7.9
세외수입	6,392	98,024	75,303	68,911	△22,721	1,078.1	△23.2
경상적세외수입	534	6,047	3,380	2,846	△2,667	533.0	△44.1
이지수입	534	6,047	3,380	2,846	△2,667	533.0	△44.1
임시적세외수입	5,858	91,977	71,923	66,065	△20,054	1,127.8	△21.8
보조금반환수입	5,858	91,977	71,923	66,065	△20,054	1,127.8	△21.8
보조금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국고보조금등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국고보조금등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0	3,000	3,000	3,000	0	0.0	0.0
보전수입등	0	3,000	3,000	3,000	0	0.0	0.0
전년도이월금	0	3,000	3,000	3,000	0	0.0	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655,936	753,768	813,247	157,311	59,479	24.0	7.9
세외수입	6,392	98,024	75,303	68,911	△22,721	1,078.1	△23.2
경상적세외수입	534	6,047	3,380	2,846	△2,667	533.0	△44.1
이자수입	534	6,047	3,380	2,846	△2,667	533.0	△44.1
기타이자수입	534	6,047	3,380	2,846	△2,667	533.0	△44.1
임시적세외수입	5,858	91,977	71,923	66,065	△20,054	1,127.8	△21.8
보조금반환수입	5,858	91,977	71,923	66,065	△20,054	1,127.8	△21.8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5,858	91,977	71,923	66,065	△20,054	1,127.8	△21.8
보조금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국고보조금등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국고보조금등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국고보조금등	649,544	652,744	734,944	85,400	82,200	13.1	1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3,000	3,000	3,000	0	0.0	0.0
보전수입등	0	3,000	3,000	3,000	0	0.0	0.0
전년도이월금	0	3,000	3,000	3,000	0	0.0	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3,000	3,000	3,000	0	0.0	0.0

##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28억 6천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9억 9천 8백만원 대비 4.6% 감액된 수준이며, 2022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9억 6천 8백만원 대비 3.6%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2년대비		증감률(%)		
	당초	최종		증 감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계	2,997,718	2,968,378	2,860,829	△136,889	△107,549	△4.6	△3.6	
행	소계	2,997,718	2,968,378	2,860,829	△136,889	△107,549	△4.6	△3.6
정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2,854	△4,862	△4,862	△3.3	△3.3
관	재무활동	0	3,070	3,041	3,041	△29	0.0	△0.9
리	사업비	2,850,002	2,817,592	2,714,934	△135,068	△102,658	△4.7	△3.6
	교부금	0	0	0	0	0	0	0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예산		2023 예산	2022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계	2,997,718	2,968,378	2,860,829	△136,889	△107,549	△4.6	△3.6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2,850,002	2,817,592	2,714,934	△135,068	△102,658	△4.7	△3.6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174,988	174,988	183,342	8,354	8,354	4.8	4.8
을지연습준비 및 실시	101,604	101,604	103,276	1,672	1,672	1.6	1.6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 설 유지관리	73,384	73,384	80,066	6,682	6,682	9.1	9.1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관리	38,305	38,305	33,405	△4,900	△4,900	△12.8	△12.8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 관리	38,305	38,305	33,405	△4,900	△4,900	△12.8	△12.8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563,020	552,410	662,430	99,410	110,020	17.7	19.9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79,720	69,110	71,820	△7,900	2,710	△9.9	3.9
예비군 육성·지원	350,000	350,000	350,000	0	0	0.0	0.0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18,200	18,200	65,200	47,000	47,000	258.2	258.2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115,100	115,100	175,410	60,310	60,310	52.4	52.4
사회복무요원관리	461,941	461,941	316,533	△145,408	△145,408	△31.5	△31.5
사회복무요원 관리	461,941	461,941	316,533	△145,408	△145,408	△31.5	△31.5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869,472	847,672	934,233	64,761	86,561	7.4	10.2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0	3,200	0	0	△3,200	0.0	△100.0
민방위교육운영비	564,127	564,127	593,843	29,716	29,716	5.3	5.3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30,875	30,875	24,225	△6,650	△6,650	△21.5	△21.5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89,260	89,260	△25,000	0	△21.9	0.0
민방위교육장 운영	160,210	160,210	226,905	66,695	66,695	41.6	41.6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742,276	742,276	584,991	△157,285	△157,285	△21.2	△21.2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14,731	14,731	6,651	△8,080	△8,080	△54.9	△54.9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727,545	727,545	578,340	△149,205	△149,205	△20.5	△20.5
행정운영경비	147,716	147,716	142,854	△4,862	△4,862	△3.3	△3.3
기본경비	147,716	147,716	142,854	△4,862	△4,862	△3.3	△3.3
재무활동	0	3,070	3,041	3,041	△29	0.0	△0.9
보존지출(비환급 및 기타)	0	3,070	3,041	3,041	△29	0.0	0.0

## II.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검토

○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6억 5천 6백만원) 대비 24.0%(1억 5천 7백만원) 증액된 8억 1천 3백만원\* 수준임.

\* 전년 최종예산(7억 5천 4백만원) 대비 7.9%(5천 9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주요 증액 사유는 당초 대비 국고보조금 13.1%(8천 5백만원) 증액에 따른 것임.

#### 세외수입

○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외수입 과목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구성되며, 전년 당초예산(639만원) 대비 1,078.1% (6,891만원) 증액된 7,53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9,802만원) 대비 23.2%(2천 3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 기타이자수입

○ 비상기획관 ‘기타이자수입’은 2022년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수입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53만원) 대비 533.0%(285만원) 증액된 33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605만원) 대비 44.1%(267만원) 감액된 수준임.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다만, 비상기획관은 2023년 시비보조금\* 추계액(7억 1천 9백만원)에 최근 5년 반환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4.7%)를 적용하여 기타이자수입을 추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자치구 교부 시비보조금 사업(빈방위 교육 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및 예비군 육성지원금

(최근 3년간 기타이자수입 결산 및 2022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당초)	결산전망	
472	457	499	365	563	1,898	534	6,047	3,380
(결산률) 96.8		73.1		337.1		1,132.4		전년대비 633.0%

- 2020년 결산률은 73.1%(예산 499천원, 결산 365천원)에 그치는 반면, 2022년 결산전망에 따른 결산률이 1,132.4%(당초예산 53만원, 결산전망 605만원)에 달하는 등 추계라고 하기에는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 이는 전례답습적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조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2022년 자치구에 보조한 시비보조금(7억 1,923만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586만원) 대비 1,127.8%(6,607만원) 수준인 7,192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9,198만원) 대비 21.8%(2,005만원) 감액된 수준임.

※ 관련 사업: 민방위교육운영비,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의수입	
	220 임시적세의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다만, 비상기획관은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대응이 완화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여,
- 본 세입 추계 방식을 2022년 시비보조금 교부액에, 코로나19 상황(2020년~2021년)에서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평균반환율에서 연감소율 5%를 뺀 10%를 적용하여 추계(7,192만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 시비보조금 반환율>**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시행년도 보조금	1,454,845	733,870	733,981	783,584	1,077,911	747,516	707,329
다음년도 반환금	225,039	22,141	16,407	10,365	4,977	133,062	91,977
반환율(%)	15.4(평균)	3.0	2.2	1.3	0.4	17.8	13.0

- 보조 사업 활성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예년 반환금 규모(2019년도 10,365천원)의 7배에 달하는 2023년 예산편성액(71,923천원)으로 볼 때, 추계 방식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면밀하지 못한 추계로 보이며,

〈최근 3년간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2022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당초)	결산전망	
17,332	10,365	13,264	4,977	6,353	134,443	5,858	91,977	71,923
(결산률) 59.8		37.5		2,116.2		1,570.1		전년대비 1,227.8%

- 실제로, 2020년 결산률은 37.5%(예산 1,326만원, 결산 498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1년 결산률은 2,116.2%(예산 635만원, 결산 1억 3,444만원), 2022년 결산전망에 따른 결산률은 1,570.1%(당초예산 56만원, 결산전망 9,198원)에 달하는 등 무질서한 추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 이는 시비보조금 예산 편성부터 자치구로부터의 부실한 수요 조사를 통한 시비보조금 규모를 산정함에 따른 것으로, 예측가능한 시비보조금 운영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구가 교부받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환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자치구가 제대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여 과도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으로 전년 당초예산(6억 5천만원) 대비 13.1%(8,540만원) 증액된 7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 6억 5천 3백만원 대비 12.6%(8,220만원) 증액된 수준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등		
511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1.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특별회계가 설치된 보조금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특별회계에 진출하는 등의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및 2022년 전망액〉

(단위 : 천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당초)	결산전망	
760,178	760,178	613,164	590,064	615,454	615,454	652,744	649,744	7349443
(결산률) 100.0		96.2		100.0		99.5		전년대비 112.6%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2,66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3억 5,389만원)”,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1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3억 4,020만원)” 등 4개의 세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 부처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증 감
합 계			652,744	734,944	82,200
국 고 보조금	행 정 안정부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31,500	26,600	△4,900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경비	3,200	0	△3,200
		민방위교육운영비	268,004	353,894	85,890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14,25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35,790	340,200	4,410

- 비상기획관의 국고보조금(7억 3,494만원)은 세입예산(8억 1,325만원)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23년 14개 사업 세출예산액(28억 6천 1백만원)의 24.8%에 그치는 수준임.

**< 비상기획관 2023년 세출예산 사업 >**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0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0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31,50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0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0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0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0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0
9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353,894
10	민방위대교육훈련-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기본법	0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0
13	민방위 장비 보급 확충	민방위기본법	0
1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340,200

- 다만, 비상기획관 사업 중 지역민방위 관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 제13조)로 규정하고 있을 뿐,

**<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 나머지 ‘을지태극연습’,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대부분의 비상기획관 사업은 국방과 관련되거나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사무에 관련된 사업임에도,
- 국고보조금 지원이 비상기획관 세출예산의 24.8%(7억 3천 5백만원)에 그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137조제2항)과,

-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138조제2항)한 조문을 위반하는 재정운영 행태라고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자의적 운영의 원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 비상기획관 소관 사무 중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만 기준보조율 30%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 조차하고 있지 않은데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발췌)>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b>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b>	<b>30</b>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 지방자치의 일반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한 경비 부담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대교육훈련” 사업의 ‘2022년 지역민방위대 육성 권역별 경진대회’가 취소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국고보조금 3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려는 것임.
-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액을 전망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예비비및기타-반환금기타)’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2 전년도 이월금	
	712-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 시·군·구에서 반납하는 금액은 시·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

## 2. 세출예산 검토

- 비상기획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29억 9천 7백만원) 대비 4.6%(1억 3천 6백만원) 감액된 28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29억 6천 8백만원) 대비 3.6%(1억 8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전년 예산 대비 주요 증액(20%이상) 사업은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4천 7백만원, 258.2% 증액)와 “시민 안보의식 함양”(6천만원, 52.4%), “민방위교육장 운영”(6천 7백만원, 41.6%) 등 3개 사업이며,

###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 번	사업명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예비군의날 등 안보행사 실시	18,200	65,200	47,000	258.2	○코로나19로 축소 및 미편성된 서울수복기념행사 지원비를 코로나이전 운영예산으로 편성('21년 축소, '22년 미편성)
2	시민 안보의식 함양	115,100	175,410	60,310	52.4	○전적지견학 참여인원(480명→2,500명) 확대 및 행정운영비 등 제반비용 증가

3	민방위교육장 운영	160,210	226,905	66,695	41.6	○공무직→축타직으로 1명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옥상방수 및 여자화장실 등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증가
---	-----------	---------	---------	--------	------	--

- 주요 감액 사업(20%이상)은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경비”(△7백만원, 21.5%),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2천 5백만원, 21.9%),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8백만원, 54.9%),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1억 4천 9백만원, 20.5%) 등 4개 사업임.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0,875	24,225	△6,650	△21.5	○국비(30%)매칭사업, 시비매칭비율(35%→21%) 변경으로 인한 감소(국30:시21:구49)
2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4,260	89,260	△25,000	△21.9	○일부 민방위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합교육의 교보재 제작 및 구입비 감소
3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14,731	6,651	△8,080	△54.9	○민방위6종장비 중 확보율 100%미만 장비에 대한 보급·확충으로 예산 조정
4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727,545	578,340	△149,205	△20.5	○국비(30%)매칭사업, 시비매칭비율(35%→21%) 변경으로 인한 감소(국30:시21:구49)

### 가.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 본 사업은 전시 대비 연습과 훈련 등을 통해 공무원 전시전환 절차연습, 충무계획 점검 및 훈련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 전년 당초예산(1억 1백 6십만원) 대비 1.6%(167만원) 증액된 1억 3백 3십 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01,604	(x-) 101,604	(x-) 103,276	(x-) 1,672	(x-) 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x-) 7,416	(x-) 7,416	(x-) 7,693	(x-) 277	(x-) 4
사무관리비	(x-) 29,233	(x-) 29,233	(x-) 34,833	(x-) 5,600	(x-) 19
공공운영비	(x-) 40,005	(x-) 40,005	(x-) 38,200	(x-) △1,805	(x-) △5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x-) 3,350	(x-) 3,350	(x-) 3,35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21,600	(x-) 21,600	(x-) 19,200	(x-) △2,400	(x-) △11

○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훈련이 축소 또는 대체되는 등 제한적인 실시로 인하여 예산 편성 규모가 2019년 예산(2억 9천 4백만원) 대비 35%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 추진경위 >**

- 1968. 7월 : '68.1.21사태 계기 '태극연습' 최초 실시('69년 명칭변경 : 을지연습)
- 이후, 한미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 연도별 명칭변경
  - 을지포커스렌즈(UFL, '76년) → 을지프리덤가디언(UFG, '08년)
- 2013. 8월 :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구축(구축비 80,020천원)
- 2019. 5월 : 한국군 단독 군사훈련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
- 2020. ~ 2021. : 코로나-19대응 등 관련하여 을지연습 축소 및 대체 실시
- 2022. 8월 : 한미연합연습 연계 '을지 프리덤 쉴드(UFS)'로 명칭 변경 실시

**< 을지연습 예산 편성 경과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10월말기준)	2021년	2020년	2019년	
예산	편성액	103,276	101,604	102,350	당초 227,608 현액 95,608	293,873
	집행액		88,360	89,559	93,350	227,835
	집행잔액		4,976	12,791	2,258	66,038
	불용률		13.0	12.5%	2.4%	22.5%

- 다만, 본 사업예산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편성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이 >**

(단위:천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293,873	233,244	102,350	101,604	103,276
증감률	-3.9	-20.6	-55.0	-0.7	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0	3,300	3,350	3,350	3,350
전년 대비 증감률	0.0	0.0	1.5	0.0	0.0

- 또한, 을지연습은 전시 대비 국가 위기관리 훈련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을지연습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에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 본 사업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실시하는 ‘예비군의 날’ 창설 기념행사와, 해병대사령부의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예산(1천 8백만원) 대비 258.2%(4천 7백만원) 증액된 6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8,200	(x-) 18,200	(x-) 65,200	(x-) 47,000	(x-) 258
행사운영비	(x-) 11,200	(x-) 11,200	(x-) 58,200	(x-) 47,000	(x-) 42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3,000	(x-) 3,000	(x-) 3,000	(x-) 0	(x-) 0
행사실비지원금	(x-) 4,000	(x-) 4,000	(x-) 4,000	(x-) 0	(x-) 0

- 주요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사태로 미편성된 ‘서울수복 기념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이전 수준으로 편성(4천 5백만원 순증)한 것으로,

\* 2021년 축소, 2022년 미개최

**<2019년 제69주년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요>**

구 분	기 념 행 사	참전용사 사진전
주 관	해병대사령부(후원 : 서울시)	서울특별시
기 간	9.28(토)10:00~19:00	9.27(금) 9시~9.28(토)18시
장 소	서울광장	시청역 5번 출구 옆
참 석	2,500여명 (국회의원, 해병대사령관, 서울시안보정 책자문위원 등)	9,500여명 (기념식 2,500명+서울도서관 7,000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전행사 : 군악/의장대 시범 등 (15:00~15:53)</li> <li>▫ 기 념 식 : 태극기 게양, 축사 등 (16:00~17:00)</li> <li>▫ 만 찬 : 참전용사 소통의 장 (17:20~18:30)</li> <li>▫ 부대행사 : 장비 전시 및 체험 (10:00~19: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수복 의의 : 백월 전시보드, 미디어 영상물</li> <li>▫ 참전용사 사진 : 38인</li> <li>▫ 시민의견 게시판</li> </ul>
예 산	175백만원 ┌ 해병대 : 160백만원(기념식) └ 우리시 : 15백만원(잔디 보호)	31백만원(우리시)

- 비상기획관은 서울광장 잔디보호(1천 5백만원) 비용과, 장비전시 등 시민 체험행사(3천만원)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장비전시 행사 용역은 서울계약마당을 통해 수의계약(전문업체)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음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사로,

- 「통합방위법」 제 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 근거

-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행정1부시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 분	직 책	직 급	비 고
1	의 장	서울특별시장	단 면 직
2	위 원	서울시회의의장	
3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4	"	서울중앙지방검사장	
5	"	수도방위사령관	
6	"	서울경찰청장	
7	"	국가정보원 국장	
8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9	"	서울지방보훈청장	
10	"	서울지방병무청장	
11	"	서울지방교정청장	
12	"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3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14	"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부이사관)	
15	간사위원	서울시 비상기획관	

-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의 ‘행사실비지원금(400만원)’ 지급 내역을 보면 주로  
급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 - 행사실비지원금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잔 액
2018년	4,000	급식비	1,600	730
		간식비	1,670	
2019년	4,000	급식비	1,600	629
		간식비	1,771	
2020년	4,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4,000
2021년	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0
2022년	4,000	문화행사 공연	2,500	0
		급식비	1,5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최하는 경우 행사 진행 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일반 선거구민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바, 행사 운영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에 대한 보조금과, 비상기획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하려는 것임.

- 1990년부터 정부주관에서 재향군인회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매년 중앙과 지방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사 추진
  - 2011년도부터 시 주관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추진
  - 2016년도부터 사업명칭 변경(6.25전쟁 기념행사→ 시민 안보의식 함양)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 6.25전쟁 상흔 유적 발굴('19.3월 수도권방위사령부, 50개소)
  - 6.25전쟁 자문단 운영('19.5월~ 발굴현장 확인, 표지판 설치장소 등 검토)
  - 현황조사 및 시설소유주 동의 등 절차 이행 ('19.5월~'20.4월)
  - '20년 6·25전쟁 상흔 발굴 보존사업 추진계획 수립('20.5월)
  - '22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계획 ('22.6월)

- 2023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1억 1천 5백만원) 대비 52.4%(6천 3만원) 증액된 1억 7천 5백만원(전액 시비)으로,

※ 2022년도 당초·최종예산은 같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필(재정담당관-27900, 2022.10.31., 심의결과 안내)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15,100	(x-) 115,100	(x-) 175,410	(x-) 60,310	(x-) 52
민간경상사업보조	(x-) 40,000	(x-) 40,000	(x-) 134,810	(x-) 94,810	(x-) 237
민간행사사업보조	(x-) 40,000	(x-) 40,000	(x-) 19,000	(x-) △21,000	(x-) △53
시설비	(x-) 35,100	(x-) 35,100	(x-) 21,600	(x-) △13,500	(x-) △38

- 주요 증액 사유(산출기초)는 ‘전후세대 안보견학’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백만원)이 전후세대 안보견학 규모 확대에 따라 전년(2천만원) 대비 424.1%(1억 5백만원) 증액에 따른 것이며,
- 주요 감액 사유(산출기초)는 ‘여군창설 기념행사’ 보조금(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참석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4천만원) 대비 52.5%(2천 1백만원) 감액에 따른 것임.

〈예산사업설명서〉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민간경상사업보조	C 전후세대 안보견학 = 20,000천원	C 전후세대 안보견학 = 104,810천원
	C 6.25전쟁 기념행사 = 18,000천원	C 6.25전쟁 기념행사 = 25,000천원
	C 나라사랑 안보포럼 = 2,000천원	C 나라사랑 안보포럼 = 5,000천원
	증감사유	
○ 행사 인원 확대 및 단가 조정으로 인한 증가 - 전후세대 안보견학 규모 확대('22년 480명 → '23년 2,500명)		
민간행사사업보조	C 여군창설 기념행사 = 40,000천원	C 여군창설 기념행사 = 19,000천원
증감사유		

	○ 우수근무자/예비역 안보현장 견학 예산 감소 - 참석인원 조정 : '22년 380명 → '23년 280명 - 기념품비 단가 조정 : '22년 20,000원 → '23년 15,000원	
시설비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2,700,000원*13개소 = 35,100천원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설치 2,700,000원*8개소 = 21,600천원
	증감사유	
	○ 6.25전쟁 상흔 안내표지판 8개소 설치(35,100천원→21,600천원) -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반영(개당 2,700천원) ※ 안내표지판 소요는 27개소이며 연간 설치계획에 따라 '23년도 8개소 설치 예정	

- 한편, 본 사업 예산 편성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 감소\*해오고 있는 바 그 추이를 보면,
- 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후세대 전적지견학'(4천만원) 미실시와 '6.25전쟁 기념행사' 및, '나라사랑 안보포럼' 축소 운영으로, 당초예산(1억 4천만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감액편성(△57.1%, 8천만원)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6천만원) 대비 77.4%(4천 6백만원)를 불용한바 있으며,

〈2021년 보조금 집행·정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전 후 세 대 전적지 견학	6.25 전 쟁 기 념 행 사	나 라 사 랑 안 보 포 럼	여 군 장 설 기 념 행 사
예 산 액 (교 부 액)	60,000 (13,600)	40,000 (-)	18,000 (11,600)	2,000 (2,000)	8,000천원 전액 감추경
집 행 액	13,556	-	11,579	1,977	
집 행 잔 액	46,444	40,000	6,421	23	

- 2022년 예산(1억 1천 5백만원) 집행 실적은 10월 말 현재 69.5%(8천만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 코로나19 감염병의 7차 유행 본격화가 전망(KBS뉴스, 2022.11.17.)되는 등 현 상황으로 볼 때,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로써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편성 추이: '19년: 2억 2천만원, '20년: 2억 7천 8백만원(최종예산 1억 4천 6백만원), '21년: 1억 4천만원(최종예산 6천만원), '22년: 1억 1천 5백만원, '23년(안): \*1억 7천 5백만원(전년 대비 52.4%(6천 3만원) 증액)

- 또한, 본 사업의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검토사항을 보면 '전후세대 안보 견학' 신규견학지 발굴과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참여자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비상기획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사업 정산 검토결과	
잘된 점	보완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인원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준수</li> <li>-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코로나 행동지침 제작 배포</li> <li>- 체온계, 손소독제 및 예비 마스크 구입 비치</li> </ul> </li> <li>○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비율' 제고 ('20년 17.8%→'21년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1,485천원)을 제외한 집행액(12,071천원) 중 전용카드(제로페이) 결제액이 2,154천원(82.2%) 우리시 지침(공약활동 자원사업 집행지침 70%)를 상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후세대 안보견학' 신규견학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다방면적인 안보관 형성을 위해, 신규 견학지 및 프로그램 추가 발굴</li> </ul> </li> <li>○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참여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채로운 행사 진행</li> </ul> </li> </ul>

※ 출처 :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검토보고

○ 한편, 본 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여군창설 기념행사)은 2021년 신규 편성(8천만원)하였다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8천만원) 삭감된바 있고,

- 2022년에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0%(4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되었으며,

- 2023년에는 행사비를 축소하여 전년(4천만원) 대비 52.5% (△2천 1백만원) 감액된 1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b>02. 민간경상사업보조</b>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b>04. 민간행사사업보조</b> 1.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1) 단체운영비(사무실임차료, 상근직원인건비 등) 지원 불가 2)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다음으로, 본 사업은 관련 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 비상기획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25개에 달하고 있음에도 한 곳만을 보조사업자로 지속 운영함에 따른 형평성이나, 프로그램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2022년 행정사무감사)되고 있는바,
  - 보조사업자의 다변화 모색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1990년부터 정부주관으로 재향군인회에 위탁, 2011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 2016년부터 현재 사업명(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으로 변경)

##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보조사업자 지정 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2007.1.2. 제정)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국외업무여비)

- 본 사업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당초예산(8천만원) 대비 9.9%(△8백만원) 감액된 7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전년 최종예산(6천 9백만원) 대비 3.9%(271만원) 증액된 수준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9,720	(x-) 69,110	(x-) 71,820	(x-) 2,710	(x-) 4
사무관리비	(x-) 56,270	(x-) 45,660	(x-) 48,370	(x-) 2,710	(x-) 6
국외업무여비	(x-) 10,000	(x-) 10,000	(x-) 10,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3,450	(x-) 13,450	(x-) 13,450	(x-) 0	(x-) 0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회복이 더해져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경기둔화 우려 심화되어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한편, 비상기획관은 지난 2년 동안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감액한바 있으나,
- 2022년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은 전액 불용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침\*에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을 필요 사업에 적기 투자할 수 없게 하였는바, 「지방자치법」 제137조1)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준수의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9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25,000	18,834	6,166	24.7%
2020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25,000 <small>(20년 제2회 전액 감액)</small>	0	0	0
2021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10,000 <small>(21년 제2회 추경 전액감액)</small>	0	0	0
2022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10,000	0	0	100%
2023년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	10,000	-	-	-

**마. 민방위교육장 운영**

- 본 사업은 민방위대원과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시설(성북구 석관동)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예산(1억 6천만원) 대비 41.6%(6천 7백만원) 증액된 2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60,210	(x-) 160,210	(x-) 226,905	(x-) 66,695	(x-) 4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39,950	(x-) 39,950	(x-) 79,427	(x-) 39,477	(x-) 99
사무관리비	(x-) 48,300	(x-) 48,300	(x-) 48,711	(x-) 411	(x-) 1
공공운영비	(x-) 38,540	(x-) 38,540	(x-) 46,900	(x-) 8,360	(x-) 22
공무원 교육여비	(x-) 160	(x-) 160	(x-) 0	(x-) △160	(x-) △100
시설비	(x-) 29,360	(x-) 29,360	(x-) 46,867	(x-) 17,507	(x-) 60
자산및물품취득비	(x-) 3,900	(x-) 3,900	(x-) 5,000	(x-) 1,100	(x-) 28

- 주요 증액 사유(산출기초)는 본 시설에 축탁계약직 근무자(1명)를 충원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전년(4천만원) 대비 98.8%(3천 9백만원) 증액된 것임.

○ 축탁계약직이란, 파견·용역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원(60세 미만)과 축탁직(만 60세 이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및 '축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 '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27호, '18.12.28.)

\*\* '21년 축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16462호, '20.12.11.)

- 축탁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에서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 적합 업종(청소·경비·주차·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 까지 재고용하는 제도임.

○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의 부서별 공무원직 및 축탁직 노동자 정원 산정 결과\*에 따라, 정년이 도래하는 시설 청소 공무원(1명)을 축탁계약직 노동자로 전환하여 본 시설에 추가 재고용하기 위하여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책정하려는 것임.

\* 「2023년 축탁직 재고용 관련 공무원 및 축탁직 노동자 정원 확인 요청」 노동정책 담당관-29539(2022.11.16.) 참조

\*\* 보수는 재무국에서 인력운영비로 통합 편성하고 있으나, 축탁계약직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편성('21년 축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16462호, '20.12.11.)

※ 축탁직 전환은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참고자료)

**2023년 촉탁직 예정인원**

(단위 : 명)

부서명	계	청소	경비	주차	운전
<b>계</b>	<b>418</b>	<b>318</b>	<b>96</b>	<b>3</b>	<b>1</b>
민방위담당관	2	2	-	-	-
소방행정과	3	3	-	-	-
안전지원과	4	4	-	-	-
행정국 총무과	55	55	-	-	-
광화문광장사업과	3	2	1	-	-
서울시립대학교	50	39	11	-	-
보건환경연구원	1	1	-	-	-
인재개발원	4	4	-	-	-
소방서	32	32	-	-	-
서울종합방재센터	1	1	-	-	-
소방학교	2	2	-	-	-
상수도사업본부	51	44	7	-	-
한강사업본부	16	15	-	-	1
중량물재생센터	5	1	4	-	-
데이터센터	4	2	2	-	-
서북병원	10	10	-	-	-
어린이병원	10	9	1	-	-
은평병원	7	6	1	-	-
서울역사박물관	29	20	9	-	-
한성백제박물관	9	5	4	-	-
서울시립미술관	15	12	3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	-	-	3	-
품질시험소	2	-	2	-	-
동부도로사업소	1	1	-	-	-
서부도로사업소	2	1	1	-	-
남부도로사업소	2	1	1	-	-
성동도로사업소	1	1	-	-	-
서울대공원	33	27	6	-	-
동부공원여가센터	2	-	2	-	-
서부공원여가센터	17	1	16	-	-
중부공원여가센터	15	-	15	-	-
북부공원여가센터	2	-	2	-	-
서울시립과학관	2	1	1	-	-
서울식물원	6	3	3	-	-
아동복지센터	4	2	2	-	-
공무원수련원	6	4	2	-	-
의회사무처	7	7	-	-	-